

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지침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여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7.11.15.>

제2조 (교직과정이수) 교직과정이 설치·승인된 각 학과의 학생으로서 졸업 후 교원자격증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재학 중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11.15.>

제3조 (이수신청, 선발 및 승인)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제2학년중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(소정양식)를 지도교수 및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, 교무처장은 입학정원 대비 교육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은 신청자의 인, 적성 및 성적, 면접을 통해 학과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.<개정 2013.10.22., 2017.11.15.>

제4조 (이수기간) 교직과정은 제2학년부터 최종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 (교직과정) 교직과정이수자는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11.12., 2017.11.15.>

제6조 (기본이수영역) ①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기본이수영역과목을 7과목(21학점)이상 취득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11.12., 2017.11.15.>

②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을 변경할 때는 기본이수영역의 과목을 확인하여야 하고 변경 시에는 반드시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단 대체과목을 지정해야 한다.<개정 2017.11.15.>

제7조 (복수전공) 기독교교육과, 유아교육과, 신학과 교직이수예정자, 보육학과 교직이수 예정자는 복수전공으로 타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.

제8조 (학기당 수강학점수) 교직과목은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가능 학점인 21학점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.

제9조 (이수인정) ① 교직과정이수자는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과 교직과목 평균 성적 8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11.15.>

②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의 평균평점 및 환산점수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.<신설 2017.11.15.>

1. 평균평점은 등급별 평점에 학점을 곱하여 그 합계를 총 신청학점 수로 나눈 값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버림한다. 다만, P/F로 분류된 교과목의 학점은 평균평점을 산출할 때 총 신청학점 수에서 제외한다.
2. 평균평점으로 부여된 성적의 100점 환산은 「학칙시행세칙」 <별표4>에 의한다.

제10조 (편입학자의 이수) 제3학년의 편입학자로서 전적 대학교에서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하고 교직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한 자는 해당학과의 교직선발정원에 여석이 있을 시 계속 이수할 수 있다.

제11조 (교육실습) 교직과정이수자는 소정기간의 교육실습(교육봉사활동 포함)을 이수

하여야 하며 실습을 받은 자에 한해서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.<개정 2017.11.15.>

제12조 (교직과정 운영) 교직과정 운영 및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실습생이 부담하는 실습비로 충당한다.

제13조 (기타사항)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교육부령 [교원자격검정령] 및 본 대학교의 학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하고, 그 외의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<2008.11.12.개정>

부 칙

1. 이 지침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 지침은 200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개정 지침은 2013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4. (지침의 폐쇄) 이 지침은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개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~~[별표 1] 교직과정 이수 교과과정표 [삭제 2017.11.15.]~~

~~[별표 2] 표시 과목별 전공 및 기본이수과목 일람표 [삭제 2017.11.15.]~~